

# 일본의 다문화공생과 아이누정책

지영임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happyhime@hotmail.com))

우에다히로아키 (上田博明,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hiroaki@cu.ac.kr)



무크리(ムククリ), 무츠쿠리(ムツクリ)<sup>1)</sup>

## 1. 들어가며

최근 일본에서 일컬어지는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재일외국인의 급속한 증대와 정주화 경향을 배경으로 등장한, 외국인 수용의 관점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한영혜 2006, 155).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는 1995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을 지원했던 단체가 전신이 되어 만들어진 '다문화공생

본고에 인용된 인터넷자료는 2012년 2월 1일을 검색기준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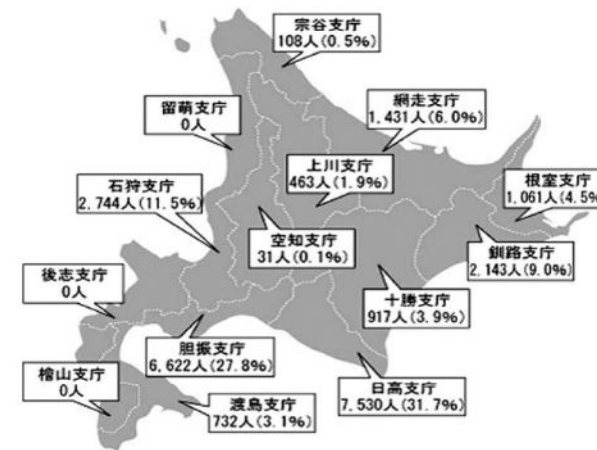
1) 사진은 에도시대후기의 여행가이며, 박물학자인 스가에마스미(菅江?澄, 1754-1829)가 1792년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그린 민속그림이다. 이 그림은 아이누 소녀들이 아이누의 민족악기 무크리를 입에 물고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연주하고 있는 그림이다. (神奈川大學21世紀COE 프로그램, 2007, 29)

센터'가 계기가 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다문화공생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로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이태주 외 2007, 163-164).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문화공생의 핵심 대상은 1980년대 중반이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본계 이민자 후손, 귀국자녀, 귀화자, 귀국한 잔류고아, 인도차이나 출신 난민, 외국인 신부 등인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조선적의 구식민지 출신자들과 일본국적의 에스닉 마이너리티로서 아이누(アイヌ, ainu), 오키나와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아이누는 원래 아이누어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며, 영적인 존재인 '카무이'에 대한 말이기도 하다.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혼슈 북부, 사할린, 쿠릴열도 등에 널리 거주해 온 아이누는 주로 수렵, 어로, 목축 등에 종사해 왔으나, 막부는 1899년 '홋카이도 구토인(旧土人) 보호법' (이하, 구토인법)을 제정하여 아이누의 농경민화와 위생지식의 보급, 그리고 국민교육의 추진에 의해 '일본인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小熊 1999, 67). 1997년 아이누를 '구토인'으로 규정하였던 식민지 법은 법안의 폐지로 귀결되어, '아이누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구토인이라는 차별호칭의 폐지뿐만 아니라 제1조에서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명언함으로써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일본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홋카이도 아이누협회 실시한 '아이누생활실태'에 의하면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

〈표 1〉 홋카이도의 아이누민족 분포도<sup>3)</sup>



누 민족의 인구는 72의 시정촌에 23,782명으로 추산된다(표1 참조)<sup>2)</sup>. 본고는 일본 전인구의 0.2%정도 밖에 차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소수자 중 하나인 아이누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아이누에 관한 정책이 「다문화공생」 논의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 <http://www.ainu-assn.or.jp/about03.html>. 아이누의 실태조사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정부에 요청한 전국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홋카이도내와 도외에 사는 아이누에 대해서는 동경도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1988년 조사에서 동경주재 아이누 추정인구는 2700명이다.

3)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누민족의 인구는 72 시정촌에 23,782명으로 日高支庁과 胆振支庁 관내에서 59.9%를 차지하고 있다.

## 2. '홋카이도(北海道) 구토인(旧土人) 보호법'의 성립과정

일본역사에서 에조(蝦夷)라 불리던 아이누민족의 영역이 지금의 홋카이도, 사할린, 쿠릴 열도로 국한 된 것은 14세기 무렵으로 그 이전까지는 혼슈의 동북부 지역도 에조치<sup>4)</sup>로 간주되었다(정병호 2004, 304). 일본의 북쪽 경계선은 와진이 야만이라는 의미를 지닌 옛 일본어 = 에미시(나중에는 에조)<sup>5)</sup>라고 부르던 북방 인근의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교역하며 때로는 전투를 치르던 지역이었다(테사 2006, 58).

와진<sup>6)</sup>이 에조치 남쪽 해안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경으로 13세기경부터 와진의 이주가 현저해 진다. 이주자의 대다수는 초기에는 아이누와의 교역을 하고 목적으로, 주로 어로, 모피, 어류, 해초 교역, 또는 인근 아이누에게 팔기 위한 나이프와 냄비 등의 상품 생산을 생활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테사 2006, 59).

1457년 고사마인의 봉기는 증가한 와진과 아이누의 대립에서 일어난다. 이 봉기는 아이누가 패배한 후에도 1세기에 걸쳐 계속 해결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와진 측 세력의 재편이 일어난다. 와진의 가키자키(蠣崎)가 대두하는데, 1603년 도쿠가와막부가 성립되자 새로운 권력자인 가카자키는 번(藩)으로 인정받고 에조치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그 때 자신이 통치할 영지(領地)를 마쓰마에(松前)로 바꾸고 번명을 마쓰마에 번(松前藩)으로 하였다.

쌀을 생산하지 않는 마쓰마에 번이 고쿠다카(石高)제도<sup>7)</sup> 하에서 번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이누와의 교역권을 주요한 경제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마쓰마에 번은 당초 아이누와의 교역권을 가신(家臣)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제번(諸藩) 상선의 출입을 금지하는 상장지행제(商場知行制)<sup>8)</sup>를 운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부상인(請負商人)들에 의한 장소청부제(場所請負制)<sup>9)</sup>로 바뀌어 아이누와의 교역은 간접적인 관리 하에 청부상인들이 행하게 되었다(田村 1992, 88). 마쓰마에 번이 교역권을 독점하기 전에는 아이누와 본토 북부와와의 사이에는 다양한 교역루트가 있었는데, 장소청부제가 확립되자 아이누교역은 청부상인을 경유하는 루트로 한정되었다(테사 2006, 64-65). 아이누는 장소청부제에 의해 교역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나중에 와진 상인 하에서 교역품의 수확과 가공을 담당하는 노동력으로 바뀌면서, 아이누민족은 와진 사회가 만든 시스템에 종속되었다.

1669년 청부상인의 횡포에 반발하여 샤쿠샤인을 중심으로 아이누의 민족항쟁이 일어나자 샤쿠샤인은 이것을 마쓰마에 번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대규모로 아이누 무장세력을

동반하여 마쓰마에까지 진출한다. 번은 막부의 지휘 하에 샤쿠샤인을 암살하고 1671년 항쟁을 제압하였다. 그 결과, 마쓰마에 번은 아이누 민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했다(貝沢1998, 119). 1789년에는 쿠나시리, 메나시 섬에서 청부상인들에 대한 반발로 젊은 아이누인들이 와진 7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대해 마쓰마에 번은 진압에 개입하는데, 직접적인 전투는 일어나지 않고 수장들의 설득으로 항복한 아이누 37명을 학살하고 사건은 수습된다(田村 1992, 90). 이 쿠나시리, 메나시 항쟁을 끝으로 조직적인 저항은 사라졌다.

마쓰마에 번 시대를 중심으로 아이누와 와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와진들은 18세기 후반까지 마쓰마에 번의 지배층은 아이누의 동화를 촉진하기보다도 그 차이를 유지하면서 번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누가 오히려 조리와 와진 특유의 삿갓 등 와진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공포했다(테사 2006, 72-73). 마쓰마에 번은 1777년 시점에서 하급무사까지 포함하여 번사(藩士)가 170호 밖에 없는 작은 번으로, 에조치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누를 각지의 수장 하에 생활하게 하는 일종의 간접통치를 취하고 있었다(小熊 1998, 51). 따라서 마쓰마에 번은 아이누를 번의 시스템에 편입시켜 동화를 꾀했다기보다는 아이누 민족이 지닌 고유의 문화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통치하기 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누에 대한 동화정책이 실시되는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18세기 들어 러시아가 남하하자 1799년 에조치 동부지역에 직할령을 설치, 이 지역에 대한 직할 통치를 실시하였다. 러시아가 물러난 이후, 1821년 막부는 직할 통치를 종료하고 다시 간접 통치를 실시하였으나 러시아가 다시 남하하자 1855년 에조치 전역에 대한 직할통치를 재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양국 사이에 국경 설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데, 일본과 러시아는 결국 1855년 "일로통교조약(日露通交條約)"을 맺어 에도로푸(Iturup) 섬 이남을 일본령으로, 우르프섬(Urup) 이북을 러시아령으로 하는 국경선을 확정하였다(최장근 2003, 564-577, 김범수 2007, 182).

명치정부는 1869년 에조치를 북해도로 개칭하고 11국 86군을 설치하고 개척사(開拓史)를 설치하였다. 개척사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군 만 직할로 하고 다른 66군을 여러 번과 토족단체에 분령 지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1871년 호적법을 공포하여 아이누를 평민적에 편입하여 법적으로 '일본인화' 하였다. 문신, 귀걸이, 주거자호(住居自曉, 사자가 나온 경우의 습관)등의 아이누의 전통적 관습을 금지하여 일본의 언어, 문자를 장려했다. 1876년의 포고에서는 아이누의 이름을 한자명과 일본인명으로 개명하도록 하였다.

아이누의 생활상의 근거를 법적으로 부정된 것은 1877년 12월의 '북해도 지권 발행 조례(北海道地券發行條例)'이다. 이 조례는 아이누의 거주지이며, 생활원(生活源)이기도 한 삼림원야(山林原野)를 무주지(無主地)로 하고 강제적으로 관유지(官有地)로 접수한 다음,

4) 아이누모시리Ainu Mosir=인간의 땅, 혹은 나라라는 뜻인데, 일본은 이를 에조치라고 불렀다.  
5) 아이누의 세계관 속에서 일본인은 시삼(シサム), 즉 이웃사람(隣人)이었다.  
6) 와진=和人은 일본인이라는 뜻.  
7) 도쿠가와 시대에 토지 생산고를 쌀 수확량에 의해 표시한 방식(테사 2006, 60).  
8) 막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교역권을 특정 번에 위임하는 제도(최장근 2004, 569).  
9) 특정의 번이 다른 번의 상인에게 교역권을 부여하는 제도(최장근 2004, 569).

거주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田村 1992, 95). 비슷한 시기 아이누는 활, 독화살의 금지, 사슴 수렵의 제한 외에도 어장의 어업권을 빼앗기는 등 생활기반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생활원을 잃은 아이누가 빈곤해지자, 당국은 1880년대에 아이누 농업예정지로 강제이주를 개시한다. 이는 경제적 편의를 위해 수렵, 어업, 채집의 민족이었던 아이누를 농민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조치들 가운데 아이누에 대한 강도 높은 동화정책은 북해도구토인보호법으로, 동법은 1899(明治32)년 3월 2일에 공포되어 다음해 4월에 홋카이도내의 아이누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모든 아이누 가족에게 5헥타르 이내의 땅을 분배했는데, 토지는 공적인 허가 없이 매각하는 것을 불허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리고 15년간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몰수됐다. 아이누 부락들의 재산은 국가통제에 놓여져서, 내무대신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테사 2006, 80). 홋카이도 아이누에 대한 1922년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수입의 53%를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농업수입을 근린 도회지에서의 계절노동과 기타 형태의 부업으로 보충해야만 했다 (테사 2006, 192). 결과적으로 이 보호법은 강제이주, 어로제한으로 생활수준의 악화를 초래했고, 아이누어와 아이누의 관습은 억압받았다고 할 수 있다(임성모 2006, 361).

### 3. 아이누 문화 진흥법 제정 의의와 한계<sup>10)</sup>

아이누인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1899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구토인법'은 아이누인의 공통 토지를 수탈하고, 수렵 민족인 아이누인의 농경민화를 강요하여 일본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1984년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는 '아이누민족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 제출하여, 100여 년간 지속되며 아이누 민족차별정책의 상징이었던 '구토인법'을 폐지하고 '아이누 신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족적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조아라 2010, 117). '아이누 신법(안)'은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가 아이누의 빈곤과 차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979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984년에 정리한 아이누민족이 직접 만든 법률요청서이다. 이하, 아이누민족이 직접 표명한 '아이누민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법률안의 제정이유가 다소 길지만, 그 내용을 전부 기재한 것은 '구토인법'의 악영향

북해도, 카라후토, 치시마 열도를 아이누모시리(아이누가 사는 대지)라고 하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공통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독자적인 역사를 구축한 집단이 아이누민족이며, 도쿠가와 막부와 마쓰마에 번의 비도한 침략과 압박과 싸우면서 민족으로서의 자주성을 지켜왔다.

명치유신에 의해 근대적 통일국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일본정부는 선주민인 아이누와의 사이에 어떤 교섭도 없이 아이누모시리 전토를 지주없는 토지로 하여 일방적으로 영토에 편입하고, 또 제정러시아와의 사이의 치시마, 가라후토 교환 조약을 체결하여 가라후토 및 북 치시마의 아이누의 안주의 땅을 강제적으로 버리게 했다.

토지도 삼림도 빼앗기고, 사슴을 잡으면 밀렵, 연어를 잡으면 밀어, 장작을 패면 도벌로 취급당하는 한편, 외진 이민이 흉수처럼 밀려들어서 처참한 마구잡이식 개발이 시작되어 아이누민족은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아이누는 급여지에 묶여 거주 자유, 농업 이외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당했다. 교육에 있어서는 민족고유의 언어도 빼앗기고, 차별과 편견을 기초로 한 동화정책에 의해 민족의 존엄은 짓밟혔다.

전후의 농지개혁은 소위 구토인 급여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농업근대화 정책의 파도는 영세민층의 아이누를 사산시키고 고단<sup>11)</sup>은 차례로 붕괴해 갔다.

지금 도내에 사는 아이누는 수 만 명, 도외는 수 천 명이라고 일컬어진다. 대부분은 부당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의해 취업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근대적 기업으로부터 내쫓겨 잠재 실업자 군을 형성하여 생활은 항상 불안정하다. 차별은 빈곤을 확대하고 빈곤은 한층 더 차별을 낳고 생활환경, 자녀의 진학 상황 등에서도 격차를 넓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소위 북해도 우타리 복지대책의 실패는 현행 여러 제도를 끌어 모은 것에 지나지 않고, 정합성을 잃을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이누민족에 대한 국가로서의 책임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이누의 민족적 권리의 회복을 전제로 한 인종차별의 일소, 민족교육과 문화의 진흥, 경제자립대책 등 발본적 또는 종합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아이누 민족문제는 일본의 근대국가로의 성립과정에서 일어난 치욕스러운 역사적 소산이며, 일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인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전국민적인 과제라고 하는 인식에서 굴욕적인 아이누 민족 차별법인 북해도 구토인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아이누민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누민족을 대상으로 한다.

을 아이누가 직접 표현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도 아이누의 생활에 '구토인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법제정운동'의 결과로 제정된 '문화진흥법'은 '아이누 민족에 관한 법률'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할 뿐, 아이누가 주장하는 민족적 권리에 대해서는 빠져있으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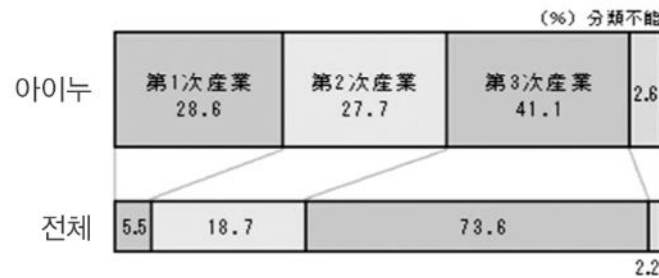
우선, 제정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홋카이도 우타리 복지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북해도는 1974년부터 아이누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0) '아이누 문화 진흥법'의 제정과정에 관해서는 조아라(2010)「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본 장은 조아라의 논고를 다수 참조하였다.

11) 마을이라는 뜻의 아이누어(필자 주)

북해도 우타리복지 대책(2001년 종료)을 실시하였다. 현재, 북해도에서는 '아이누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관한 추진방책'(2002~2008)에 근거하여 (1)생활의 안정, (2)교육의 충실, (3)고용의 안정, 산업의 진흥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의 표2, 표3, 표4, 표5)<sup>12)</sup>는 197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조사의 결과로 아이누인의 산업분류별 노동자비율, 생활 보호율, 고교 대학 진학률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누는 '구도인법'에 의해 농업 이외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당하고, 일상적인 차별과 빈곤, 취업의 기회는 물론 생활환경과 자녀의 진학 상황에서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산업분류별 노동자 비율



취업노동자의 28.6%가 농업, 어업 등의 제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2차 산업의 공업, 건설업, 제3차 산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경영규모는 영세하다.

〈표 3〉

	1972年	1999年	2006年
第1次産業	63.2	29.5	28.6
第2次産業	20.0	27.8	27.7
第3次産業	15.4	35.4	41.1

34년간 제1차 산업 취업 노동자가 1/2이하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제3차 산업 취업 노동자는 2.5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표 4〉 생활보호율(%)<sup>13)</sup>

	1972年	1979年	1986年	1993年	1999年	2006年
아이누	115.7	68.6	60.9	38.8	37.2	38.3
전체	17.5	19.5	21.9	16.4	18.4	24.6

북해도의 생활보호율이 전년도 평균보다 높은 것에 주의. 현재 생활에 대한 의식은 '매우 힘들다', '다소 곤란한 정도'를 포함한 81.1%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1.6배이다.

12) 자료2)~5)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www.ainu-assn.or.jp/about03.html>.

13) 인구1000명중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

〈표 5〉 고교·대학 진학률(%)

		1972年	1979年	1986年	1993年	1999年	2006年
고교	아이누	41.6	69.3	78.4	87.4	95.2	93.5
	전체	78.2	90.6	94.0	96.3	97.0	98.3
대학	아이누	-	8.8	8.1	11.8	16.1	17.4
	전체	-	31.1	27.4	27.5	34.5	38.5

고교 진학률은 전체 98.3%에 비해 93.5%, 대학진학률도 전체 38.5%에 비해 17.4%로 낮다.

초기의 북해도 우타리 복지대책은 말 그대로 복지, 생활향상시책의 색채가 강했는데, 1970년대 시작된 세계의 선주민족운동의 고양을 배경으로 일어난 아이누 신법 제정 운동으로 제안된 아이누 민족에 관한 법률안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아이누 민족대표로서 참정권 확보, 교육, 문화의 전승, 보존, 농림어업 및 상업업 등의 경제적 자립 확보, 민족 자립화 자금 마련, 심의기관 설립 등으로 구분된다. '아이누 신법'의 구체적 시책 안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홋카이도 우타리 복지대책사업'이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을 뿐, '민족정책'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조아라 2010, 118). 홋카이도 우타리 복지대책은 민족 억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부의 시혜적 성격이 강한 복지대책이었으며,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이나 문화생활부문 등 민족의 제반 사항에 걸친 폭넓은 정책은 실시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조아라 2010, 119).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협회는 신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누 민족은 스스로의 요구를 선주민족의 권리로 자리매김하여 선주권<sup>14)</sup>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데 있었다.<sup>15)</sup> 1986년 8월 아이누 대표단은 처음으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선주민족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유엔이 1992년 세계 선주민의 해(The Year of Indigenous People)로 선포할 때까지 스스로를 선주민족으로 재개념화하는 작업이 폭넓게 시도되었다(정병호 1995, 312). 또한, 1994년 아이누민족으로는 처음으로 가야노 시게루(萱野茂, 1926-2006)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은 아이누정책 변화에 계기가 되었다.

당시 참의원의원인 가야노와 북해도 우타리협회 부이사장인 가이자와마사루 두 사람은 소유하고 있던 논밭이 니부타니(二風谷) 댐 건설로 인해 매몰 위기에 처하자 댐건설에 반대

14) 선주권이란 '특정한 토지에 선주한 민족의 의사에 반해 국가로부터 종속을 강요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특별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권리를 선주권이라고 하는데, 권리의 내용은 토지에 관한 권리 및 자치권, 정치적 자결권이 등이 상정가능하다(菊地 2008, 150)

15) 일본정부가 아이누민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이 1979년에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서 유엔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로 알 수 있다. 제1회정기보고서(1980)에서는 '본 규약에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소수민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기술하고 있는데, 제3회 정기보고서(1991)에서는 아이누민족을 '소수민족으로서 지장없다'고 되어 있다. 제5회 정기보고서(2006)에서도 아이누민족을 선주민족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견해로서는 '선주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선주민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것은 선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길 수 있는 선주성에 동만하는 토지권과 과거의 동화정책에 대한 보상 등의 법적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菊地 2008, 162-163).

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1997년 삿포로지방법판소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아이누의 민족적 이익에 대해 “본 건 수용대상지 부근이 아이누민족에게 환경적,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며, 그 민족적 이익을 인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위법으로 했다. 그리고 아이누 민족의 선주성에 대해서 “아이누 사람들은 일본의 통치가 미치지 전부터 홋카이도에 거주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정체성을 지니왔으며, 일본의 통치로 포섭된 후에도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받아오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상실하지 않은 사회적집단”임을 판시하여 아이누 민족이 선주민족임을 인정하였다. 니부타니댐 판결을 통해 댐 건설은 중지되지 않고 완성되었지만, 재판의 판결은 아이누 민족과 토지와의 특별한 관계, 보호를 무시한 행정의 책임 및 아이누민족의 선주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sup>16)</sup>

일본 정부는 공소하지 않고 내각관방장관 하에서 우타리대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아이누문화진흥법은 이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었다. 2007년 9월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과 2008년 6월 일본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채택된 「아이누민족을 선주민족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이하, 선주민족결의)」에 이어, 같은 해 7월 관방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아이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전문가간담회」가 설치되어 아이누정책의 새로운 이념 및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어 같은 해 12월 내각관방장관을 좌장으로 하는 「아이누정책추진회의」가 설치되어, 2010년 1월 29일에 제1회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민족공생의 상징이 되는 공간」과 「북해도 외 아이누의 생활실태조사」에 대해 각각의 작업부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계속하여, 2011년 6월 24일 제3회 회의에서 양 작업부회로부터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로써 2개의 작업부회의 임무는 종료하였지만, 「민족공생의 상징공간」의 구체화, 도와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의 검토와 실시, 그리고 아이누민족에 대한 국민이해의 촉진 등에 관련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갈 필요에서 새롭게 「정책추진작업부회」가 설치되었다(北海道大學アイヌ・先住民研究センター2011, 5-7)<sup>17)</sup>.

이상과 같이 1997년 아이누를 ‘구토인’으로 규정하였던 구토인 보호법은 폐지되고 제정된 아이누문화진흥법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민족법으로 아이누민족의 선주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누문화진흥법은 아이누민족이 요구해 온 기본적 인권, 또는 생활을 보장하는 6항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법률은 아니

다. 아이누 민족이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제정을 요구해 온 내용 중, 아이누 문화에 한정된 형태로 아이누문화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 아이누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문화라는 측면에 수렴함으로써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 아이누민족의 법적권리를 피하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는 아이누민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해도 아직 선주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이 채택되었으나, 선언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선주민족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아이누 민족의 권리주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지속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菊地 2008, 147).

#### 4. 아이누문화의 표상 (박물관전시와 문화진흥법 사이에서)

아이누문화진흥법은 민족정책으로 처음 성립된 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화진흥만을 규정하여 아이누민족의 권리규정을 소홀히 한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본 장에서는 아이누에 대한 문화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아이누의 문화가 박물관에서 어떻게 표상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이누의 문화가 한국에서 소개된 적은 거의 없는데, 2008년 영남대와 일본 와세다대의 대학 간 협정에 의해 영남대박물관에서 열린 ‘아이누, 한국에 오다-일본 아이누의 생활문화특별전’ (2008.11.20~2009.3.27)이 개최되었다. 아이누 민족자료는 와세다대학 출신으로 북해도대학에 재직했던 고 토사바야시 요시오(土佐林義雄)의 유족이 기증한 컬렉션으로 와세다 대학 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들이다. 이 특별전에는 와세다 대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아이누족 고유 의상과 장신구, 생활도구, 제사용구 등 삶의 모습과 문화적 정체성,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 70여 점이 전시되었다. 예를 들면, 현존하는 아이누 전통 의상 중 가장 오래된 ‘아토시’ (19세기 전반 추정)를 비롯해 ‘카파라미프’ (19세기 중반), ‘치카르카르페’ (19세기 중반), ‘친치리’ (19세기 후반) 등이 전시되었고, 이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상당한 의미를 차지했던 ‘곰’의 영혼을 신의 세계로 보내는 송신의례에 쓰인 목검과 화살 등 제사용구도 전시되었다.

아이누의 자료가 국내에서 소개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특히 2008년은 ‘선주민족 결의’가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특별전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2009년에는 서울대박물관도 한일교류 기획전으로 ‘아이누, 서울에 오다’ 전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아이누를 전시한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열린 특별전에서도 현재의 모습보다는 전통적인 모습이 전시되었다. 문제는 박물관의 이러한 전시가 방문객들에게 현재도 아이누 민족은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누 민족은 현재는 존재하

16) <http://www.yukar.net/ainu-clam.htm>.

17) 양 작업부회의 보고서는 내각관방의 웹사이트(<http://www.kantei.go.jp/jp/singi/ainusuishin/index.html>)에 공표되어 있다.

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本田·葉月 200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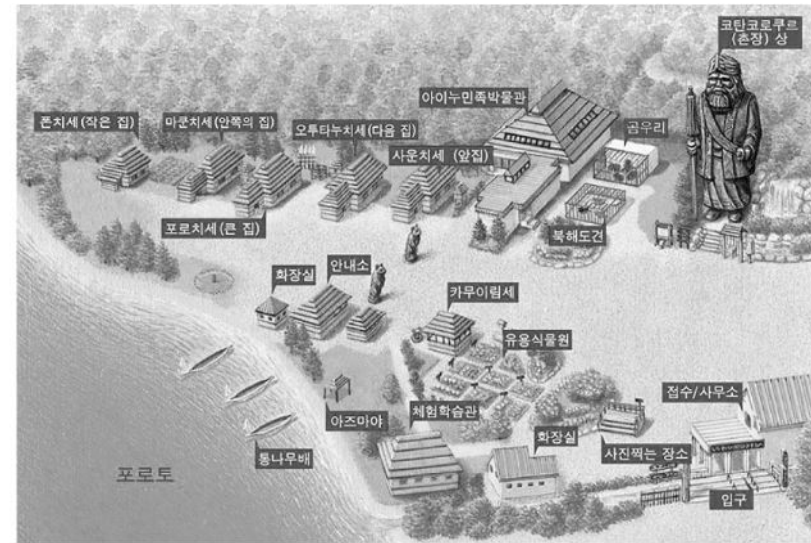
本田·葉月は 이와 같이 아이누 민족의 현재가 적극적으로 전시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전통적인 모습을 전시하면, 와진과의 차이가 강조되어 민족의 독자성이 명시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또는 민족으로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아이누계 일본인이 되어 그 선주성이 은폐되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두 번째로는 현재를 강조하는 전시는 아이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문제를 전면에 강조하게 되지만, 와진과 다름없는 현재를 전시하는 것이 되므로 민족권리운동의 열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는 이중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本田·葉月 2006, 60).

이러한 모순은 홋카이도 박물관 전시에서도 드러난다. 홋카이도에서 아이누 민족박물관이 건설된 것은 1983년이나, 전신은 1966년에 건설된 시라오이(白老)민속자료관이다. 1967년 시라오이쵸립(町立) 시라오이민속자료관(구관)으로 개관하여, 1984년에는 바로 뒤쪽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아이누민족박물관(신관)이 건설되었다<sup>18)</sup>. 박물관은 아이누 문화의 수집과 보존뿐 아니라 연구 조사 및 전승,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아이누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이라 2010, 163)<sup>19)</sup>. 아래에 제시한 그림(6)은 아이누민족박물관 안내도인데 주로 의식주와 관련한 아이누의 주거환경이 소개되어 있고, 사진(7)은 아이누 민족 박물관 전시실로 아이누에 관한 전시는 역사적 사실의 전달보다는 아이누의 의식주와 관련된 테마로 전통을 전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아이누 박물관 전시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모순은 일본 박물관에 있는 아이누자료(아이누민具)의 대부분은 연대, 산지, 수집된 과정 등 데이터(기본정보)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아이누, 한국에 오다』의 토사비야시 컬렉션도 역사학, 민속학상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컬렉션의 대부분은 제작지와 연대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菊池 2008, 107). 연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예를들면, 홋카이도대 식물원 박물관의 경우, 명치시대 말기까지 박물관자료는 정리도 체계화도 되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식물원 박물관에서 학술적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명치말기부터 소화초기의 수집 자료로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는 수렵, 어로, 채집에 관한 것과 동물보내기 의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박물관 아이누자료에 관여한 홋카이도대의 연구자는 동물학과 농학의 연구자들이였으며, 그들은 '아이누가 사는 홋카이도는 미개한 곳'이므로 고고학 및 향토사학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다고 한다(沖野 2005, 59). 따라서 아이누 자료는 '동물학표본'으로 의식되어 수집되었으며, 처음부터 전시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이누는 수렵, 어로, 채집하는 원시적 민족'을 증명하는 전시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동물학표본'으로 수

18) 현재는 양쪽 모두 재단법인 아이누민족박물관이 운영을 하고 있다.  
19) アイヌ民族博物館, 1996, 『二十年の?み : 社団法人設立20年記念誌』, 제인용.

〈그림 6〉 아이누민족박물관 안내도<sup>20)</sup>



〈사진 7〉 아이누민족박물관 전시실(신관)



주로 의식주 등의 테마로 전시되어있다.

집된 자료가 유래가 다른 자료의 부품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沖野 2005, 57). 이 사례는 홋카이도대학 식물원 자료관에 한정된 예이지만, 이러한 사정은 아이누 자료의 제작지와 연대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20) <http://www.ainu-museum.or.jp/kr/info/map.html>, 아이누민족박물관 한국어 안내.

일본의 아이누관련 박물관에서 표상되는 아이누의 문제는 문화진흥법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민족정책에서도 모순으로 드러난다. 문화진흥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의 제정 목적은 '아이누 사람들의 자부심의 원천인 아이누의 전통 및 아이누문화<sup>21)</sup>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누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 전통 등에 관한 국민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개발을 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아이누 사람들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꾀하고 더불어 일본의 다양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아이누민족은 공식화 되었으며,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일본을 제시하여 다문화공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누 문화진흥법의 사업내용을 보자.

〈자료 8〉 아이누문화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된 사업의 내용<sup>22)</sup>

(1) 아이누에 관한 종합적 및 실천적인 연구의 추진

연구자의 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아이누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연구와 출판물의 작성에 대해 조성한다.

(2) 아이누어의 진흥

현재, 북해도내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이누어 교실을 충실히 하기 위해 부족한 아이누어 지도자의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초심자용 아이누어강좌를 STV(삿포로 텔레비전 방송)라디오에서 재방송을 포함, 주2회 방송한다.

(3) 아이누문화의 진흥

각지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수집된 민족의상, 생활용구 등을 전시공개하고 아이누 사람들의 전승의욕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이누 문화를 소개하는 아이누 공예품전을 개최한다. 또한, 아이누 고전무용, 구송문예(유카라) 등의 실연, 강연, 전시 등을 통해 아이누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아이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4) 아이누 전통과 문화에 관한 보급개발

폭넓게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전국각지에서 아이누의 전통과 문화를 테마로 한 기초적인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또한, 동경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누 사람들의 문화활동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아이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행하는 '아이누문화 교류센터'를 운영한다.

21) 아이누진흥법에서 말하는 아이누 문화란 '아이누어 및 아이누에게 계승되어 온 음악, 무용, 공예 그 외의 다른 문화적 소산 및 이로부터 발전한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2) <http://warp.ndl.go.jp/info:ndljp/pid/259973/www.mlit.go.jp/hkb/ainu/index.html>

(5) 아이누의 전통적 생활공간(이오루<sup>23)</sup>)의 재생

삼림과 물 주변 등에서 아이누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필요한 수목, 초본 등의 자연소재의 확보가 가능하며, 그 소재를 사용해서 아이누문화의 전승활동 등이 행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아이누 문화진흥재단은 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아이누문화의 진흥 등 각종사업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행하는 지정 법인으로서 1997년 11월에 재단법인 아이누문화진흥·연구추진기구(이하, 아이누문화진흥재단)로 지정되었다<sup>24)</sup>. 이 기관은 자료8)의 사업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누 문화로 아이누어, 민족의상, 생활용구, 아이누 고전무용, 유카라 등의 구송문예, 이오만테, 이오루 등을 언급하며, 전통문화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아이누의 전통문화 진흥이 아이누가 선주민족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공생의 가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아라는 일본정부가 문화진흥법을 정치, 경제적 관점이 아닌 일본의 다양성이라는 시각에서 아이누 민족문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아이누문화는 '일본문화'와 반대되는 차이점으로 정의되었고, 그 결과 다문화적 가치가 강조되었다고 논한다(조아라 2010, 129).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아이누에 관한 정책이 문화정책에 편중된 또 다른 예로 아이누 문화진흥 관련시책예산을 들 수 있다. 아이누 문화진흥 관련시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아이누문화의 진흥'은 전체사업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액은 338백 만 엔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2008년 북해도 아이누 생활양상 관련 시책 예산(국비) 817백 만 엔과 비교해보아도,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9〉 2008년도 아이누문화진흥관련시책예산(아이누문화진흥재단)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338백만엔(보조율1/2)

(단위 : 백만엔)

구분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합계
아이누에 관한 종합적 실천적 연구의 추진	9	9	18
아이누어의 진흥	-	34	34
아이누문화의 진흥	-	160	160
아이누의 전통이나 문화에 관한 보급개발	56	-	56
아이누의 전통적 생활공간(이오루)의 재생	56	14	70
합계	121	217	338

※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합계

23) ioru, 수렵과 채취의 권리를 가진 땅.

24) 아이누문화진흥재단의 예산은 국토교통성 및 문부과학성이 보조하고 있으며, 나머지의 경비는 북해도가 보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물관의 전시와 문화진흥법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전통을 어떻게 표상하는가에 있다. 박물관은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과거의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아이누 민족을 과거에 가두고 미개성을 연출하는 장치가 된다.

실제, 전통을 강조하는 전시에서는 그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과 동화정책에 의한 아이덴티티의 상실, 문화와 사회적인 붕괴라는 현실을 은폐하는 효과도 있다(本田·葉月 2006, 57). 마찬가지로 아이누문화진흥법도 전통을 되살리는 문화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현재보다는 과거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복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즉, 기본적 인권, 또는 경제나 생활을 보장하는 시책을 강구하려는 시점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5. 나오며

1899년 제정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던 구토인보호법에 대신하는 문화진흥법은 불충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민족법으로, 명치시대에 시작된 근대국가일본의 '단일민족국가'의 환상을 깨고, 다민족, 다문화공생의 논의와 제도,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大塚 2004, 140).

이러한 문화진흥법이 제정된 배경으로 1981년부터 1983년에 걸쳐 유엔의 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선주민에 대한 차별문제 연구'의 특별보고자인 마르티네스 고보(Martinez-Cobo)의 보고서에 나타난 선주민족의 정의 등을 전제로 아이누를 일본의 선주민족이라고 인정한 니부타니담 판결 결과와 유엔이 정한 '세계 선주민의 해' 선포로 국제사회의 영향력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진흥법은 아이누민족이 지니는 문제를 문화라는 측면에 수렴함으로써 선주민족의 권리로서의 토지권, 자결권, 교육권 등에 대한 논의가 유보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토인 법이 폐지되기까지 100년이나 흘렀지만, 이러한 일본의 아이누 정책의 변화에는 국가의 제도적 틀에 규정되는 부분들을 바꾸려는 아이누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미 구토인보호법에 맞서 1930년에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를 설립하고 아이누 고유의 문화, 전통보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그 후,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는 1961년에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구토인 보호법' 철폐, '아이누 선주민족 결의'의 청원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2009년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협회는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문화의 보존, 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정신혁 2008, 145)<sup>25)</sup>.

아이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인 내부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를 제시하려는 '일본인론'에 대항하는 담론이 아니라, 아이누 사회의 다양하며 역동적인 전통을 통해 사회진화론의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테사 2006, 246). 즉, 아이누가 아이누어, 민족의상, 생활용구, 아이누 고전무용, 유키라 등의 구승문예, 이오만테, 이오루 등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통을 더 이상 원시적인 과거의 잔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간주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테사 2006, 247).

현재의 아이누 관련 정책이 다문화주의, 다문화공생 담론으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내셔널리즘과 결합되어 아이누 민족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문화공생이라는 담론 안에서 아이누가 선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인지, 또는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긴장과 각축이 존재할 것이다(한영혜 2006, 180, 한영혜 2010, 327). 그런 의미에서 문화진흥법과 아이누 선주민족결의의 채택 등은 선주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공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25) 아이누가 구성하는 최대의 민족단체. 성원은 홋카이도 거주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가입 회원수는 2011년 현재 3234명이다.



## 참고문헌

### 인터넷자료

- <http://warp.ndl.go.jp/info:ndljp/pid/259973/www.mlit.go.jp/hkb/ainu/index.html>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국 홈페이지
- <http://www.yukar.net/ainu-dam.htm> 유카라넷
- <http://www.frpac.or.jp/index.html> 아이누문화진흥·연구추진기구
- <http://www.ainu-assn.or.jp/about04.html> 홋카이도 아이누협회
- <http://www.kantei.go.jp/jp/singi/ainusuishin/index.html> 내각관방 웹사이트

### 한국어

- 김범수, 2007.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1, 177-354.
- 영남대박물관, 2008. 『아이누, 한국에 오다-일본 아이누의 생활문화 특별전』
- 이태주 외, 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 이념의 대두와 정책적 전개」 『다문화·다민족 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9-201.
- 정병호, 1995.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소수민족아이덴티티의 부활-일본 홋카이도의 선주민 아이누민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민족학회, 301-319.
- 정신혁, 2008. 「일본 ‘아이누 선주민족 결의’ 의 의미」 『월간 말』 7, 142-147.
- 조아라, 2010.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 『다문화사회의 일본과 정체성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08-150.
- 조아라, 2011. 「아이누의 민족 문화 관광 실천의 공간정치」 『‘관광’으로 읽는 홋카이도-관광산업과 문화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54-195.
- 한영혜, 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구축」 『사회와 역사』 71, 155-184.  
2010. 「‘다민족·다문화’ 일본과 정체성의 재구축」 『다문화사회의 일본과 정체성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00-330.
- 최장근, 2004. 「러일 국경분쟁 발생과 아이누 민족의 지위소멸과정에 관한 고찰-아이누 모시리를 둘러싼 러일 아이누민족간의 정치역학관계-」 『일본어문학』 25, 561-588.
- 테사모리스스즈키 지음. 임성모 옮김,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아이누와 식민주의』 산치림 (원제:テッサ・モーリス = 鈴木, 2000 『邊境から眺める』みすず書房).

### 일본어

- 秋月俊幸, 1992. 「千島列島の領有と經營」 『近代日本と植民地』 岩波講座°, 122-124.
- 大塚和義, 2004. 「現代におけるアイヌ民族自立運動に関する諸問題-近代同化政策から現在の新法制定論議まで-」 『國立民族博物館調査報告』 50, 137-145.
- 沖野慎二, 2005. 「博物館資料が語るアイヌ文化」 『平成16年度普及啓發セミナー-報告集』 財團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56-61.
- 小熊英二, 1998.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 神奈川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2007. 「人類文化研究のための非文字資料の體系化」 研究成果報告書 『日本近世生活繪引』 北海道編, 29°
- 菊地洋, 2008. 「アイヌ民族の權利に對する2つのアプローチ-人權として權利解析と集團としての權利解析の可能性-」 『茨城大學政經學雜誌』 第78號, 148-168.
- 田村貞雄, 1992. 「內國植民地としての北海道」 『近代日本と植民地』 岩波講座, 87-99.
- 常本照樹, 2005. 「先住民族の文化と知的財産の國際的保障」 『知的財産法政策研究』 15, 13-36.
- 北海道大學アイヌ・先住民研究センター, 2011. 『北海道大學アイヌ・先住民研究センターニューズレター』 第一號.
- 本多俊和・葉月浩林, 2007. 「アイヌ民族の表象に關する考察: 博物館展示を事例に」 『放送大研究年報』 24, 57-68.